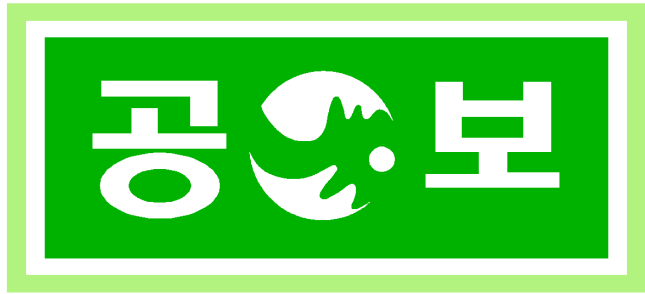


# 울산광역시북구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공 관	기 관 의 장



**제 874 호 2014. 3. 3(월)**

## 고 시

-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4-37호[도로명주소 고시] ..... 2
-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4-38호[도로명주소 변경 고시] ..... 4
-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4-39호[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(화봉쌍용예가)승인 고시] ..... 5
-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4-41호[하천점용허가 고시] ..... 7

## 공 고

-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4-211호[하천(소하천) 점용(변경)허가 및 실시계획인가(변경) 고시] ..... 8

회 관	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발행: 울산광역시북구    편집: 기획홍보실(☎241-7124 행정7124)

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4 - 37호

### 도로명주소 고시

우리구 관내 건물에 대하여 「도로명주소법」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4년 3월 3일

울산광역시 북구청장

○ 도로명주소 : 울산광역시 북구 효암로 90외 16건

종전주소	도로명주소	도로명 고시일	도로명 부여사유
(별지참조)			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민원지적과 (☎052-241-7583, 7585)에 문의 또는 울산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(www.bukgu.go.kr) 및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(www.juso.go.kr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○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
- 도로명주소는 2014. 3. 3.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.
- 공공기관에서 비치·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
○ 도로명주소 변경 등

-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.

○ 참고사항

-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, 동·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 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.

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조서

순번	종전주소	도로명주소	도로명주소 고시일	도로명부여사유	도로명 고시일	비고
1	울산광역시 북구 명준동 222	효암로 90	2014-03-03	지역과 주변의 지역성을 반영하여 도로명을 부여하였다.	2013-12-30	
2	울산광역시 북구 호수지구 108 8L	수동4길 15	2014-03-03	수동마을 명칭을 사용하여 도로명을 부여하였다.	2013-12-30	
3	울산광역시 북구 호수지구 128 3-1L	수동5길 22-1	2014-03-03	수동마을 명칭을 사용하여 도로명을 부여하였다.	2013-12-30	
4	울산광역시 북구 호수지구 128 3-2L	수동5길 24	2014-03-03	수동마을 명칭을 사용하여 도로명을 부여하였다.	2013-12-30	
5	울산광역시 북구 호수지구 158 5L	수동1길 25	2014-03-03	수동마을 명칭을 사용하여 도로명을 부여하였다.	2013-12-30	
6	울산광역시 북구 호수지구 168 4L	수동6길 13	2014-03-03	수동마을 명칭을 사용하여 도로명을 부여하였다.	2013-12-30	
7	울산광역시 북구 호수지구 168 5L	수동6길 11	2014-03-03	수동마을 명칭을 사용하여 도로명을 부여하였다.	2013-12-30	
8	울산광역시 북구 호수지구 188 3-1L	수동5길 21-9	2014-03-03	수동마을 명칭을 사용하여 도로명을 부여하였다.	2013-12-30	
9	울산광역시 북구 호수지구 188 5L	수동5길 21-1	2014-03-03	수동마을 명칭을 사용하여 도로명을 부여하였다.	2013-12-30	
10	울산광역시 북구 호수지구 218 10L	수동3길 22	2014-03-03	수동마을 명칭을 사용하여 도로명을 부여하였다.	2013-12-30	
11	울산광역시 북구 호수지구 58 10L	수동4길 6-5	2014-03-03	수동마을 명칭을 사용하여 도로명을 부여하였다.	2013-12-30	
12	울산광역시 북구 수지구 56 9L	수동4길 6-7	2014-03-03	수동마을 명칭을 사용하여 도로명을 부여하였다.	2013-12-30	
13	울산광역시 북구 호수지구 68 1L	수동4길 12	2014-03-03	수동마을 명칭을 사용하여 도로명을 부여하였다.	2013-12-30	
14	울산광역시 북구 호수지구 178 2L	수동5길 17-11	2014-03-03	수동마을 명칭을 사용하여 도로명을 부여하였다.	2013-12-30	
15	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명촌지구 706 2-4L	명촌1길 7-7	2014-03-03	옛명칭이며 현재도 사용하는 명칭이므로 도로명을 부여하였다.	2004-12-27	
16	울산광역시 북구 명진동 424, 426-9	명진도담길 12-8	2014-03-03	복이 길이고 낙낙안 길이라는 의미로 도로명을 부여하였다.	2011-08-16	
17	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물류단지 88-2L	진장우동로 95	2014-03-03	진장유동단지외 유동단지로서의 기능과 의미를 대외적으로 널리 알리고자 도로명을 부여하였다.	2009-01-23	

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14 - 38호

## 도로명주소 변경 고시

우리구 관내 도로명주소 변경 건물에 대하여 「도로명주소법」 제18조제2항에 따라 변경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4년 3월 3일

울산광역시 복구청장

○ 도로명주소 변경사항 : 울산광역시 복구 명촌1길 7-5

종전주소	변경전 도로명주소	변경후 도로명주소	도로명주소 변경일	변경 사유
진장명촌 70B 2-3L	명촌1길 7-7	명촌1길 7-5	2014. 3. 3	부여오류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복구 민원지적과 (☎052-241-7583,7585)에 문의 또는 울산광역시 복구청 홈페이지(www.bukgu.go.kr) 및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(www.juso.go.kr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○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
- 도로명주소는 2014. 3. 3.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.
- 공공기관에서 비치·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제지)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
○ 참고사항

-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, 동·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.

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4 - 39호

##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(화봉쌍용예가)승인 고시

케이비부동산신탁(주) 대표 박인병이 시행하는 울산광역시 북구 화봉동 1463번지상의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신청에 대하여 주택법 제16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변경 승인하였기에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4년 2월 27일

### 울산광역시 북구청장

#### 1. 사업계획 승인 내역

사업시행자

- 1) 사업의 명칭 : 주택건설사업[공동주택(아파트) 및 부대·복리시설]
- 2) 사업주체
  - 가. 주 소 :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823
  - 나. 성 명 : 케이비부동산신탁(주) 대표 박인병
- 3) 사업 위치 : 울산광역시 북구 화봉동 1463번지

사업개요

사업종류	구 분	승 인 내 용		비 고
		변 경 전	변 경 후	
주택건설사업 계획변경승인	사업주체	케이비부동산신탁(주) 대표이사 손영환	케이비부동산신탁(주) 대표이사 박인병	변 경
	대지면적	51,031.90㎡	51,031.90㎡	
	건축면적	10,237.92㎡	10,237.92㎡	
	연 면 적	74,120.94㎡	74,120.94㎡	
	건 폐 율	20.06%	20.06%	
	용 적 륜	115.04%	115.04%	
	동수(주/부)	16동/8동	16동/8동	
	세 대 수	487세대	487세대	
	사 업 비	135,747,000천원	135,747,000천원	
	사업기간	2012.5 ~ 2013.12	2012.5 ~ 2014.5	변 경
주택형별	일반 민영아파트	일반 민영아파트		

2. 사업시행기간 : 2012. 5. ~ 2014. 5.

3. 법률에 의한 인·허가 등의 의제 등

건축법 제11조 「건축허가」, 동법 제14조 『건축신고』, 동법 제20조 「가설건축물 허가, 신고」,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 『개발행위의 허가』 등 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되어, 주택법 제17조 규정에 의거 다른 법률에 의한 의제 처리된 사항을 모두 포함합니다.

3. 승인관련 서류 : 복구청(건축주택과)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

4. 기타 상세한 사항은 건축주택과(☎241-8022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4 - 41 호

## 하천점용허가 고시

하천법제 33조제6항 및 「하천법 시행규칙」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하천 점용허가 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14년 3월 3일

### 울산광역시 북구청장

성 명	울산광역시 북구청 (환경위생과)				
주 소	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				
점용위치	대안동 1041-1	하 천 명	신명천		
점용목적	토지점용 (이동식 공중화장실 설치)	점용면적 (㎡)	구 분	일시	영구
			지방하천	-	7.5
점용기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일 시 -</li> <li>○ 영 구 2014. 3. 3. ~ 영구</li> </ul>				
토지 소재지	소재지	지 번	지목	편입면적(㎡)	소유자
	구,군 동,리			하천구역	
	북구 대안동	1041-1	제	7.5	국토교통부

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4 - 211호

## 하천(소하천) 점용(변경)허가 및 실시계획인가(변경) 고시

「하천법」 제30조제6항, 제33조제1항 및 제6항 및 「소하천정비법 시행령」 제7조 제3항 및 「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」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하천(소하천) 점용(변경) 허가 및 실시계획인가(변경)하고 허가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14년 3월 3일

### 울산광역시 북구청장

성 명	한진 남부건설처							
주 소	부산광역시 서구 보수대로 21							
점용위치	대안동 1110번지 외 7필지		하 천 명	대안천, 신명천, 우음천				
점용목적	동울산변전소 공사현장 진입로 (가도) 확보		점용면적 (㎡)	구 분	당초	변경		
				계	6,773	9,947		
				지방하천	2,476	4,114		
소 하 천	4,297	5,833						
점용기간	○ 일 시		2013. 8. 21. ~ 2014. 11. 31 (변경없음)					
	○ 영 구		-					
하천공사의 명칭	하천점용 및 토지형질변경 (굴착, 절토등)		하천공사 목적	동울산변전소 공사현장 진입로 (가도) 확보				
하천공사 시행자 성명(주소)	점용자와 동일		공사기간	2013. 8. 21 ~ 2014. 11. 31				
공사위치	대안동 110번지의외 7필지							
토지 소재지	소재지		지 번	지목	편입면적(㎡)			
	구,군	동,리			하천구역		소하천구역	
			당초	변경	당초	변경		
	북구	대안동	1066-1	천	472	472	2,376	3,490
산346-1			천	1,376	2,139	-	-	농림축산식품부



구,군	소재지		지 번	지목	편입면적(m <sup>2</sup> )				소유자
	동,리	하천구역			소하천구역		소유자		
					당초	변경		당초	
북구	대안동	1065	천	280	280	-	-	국토교통부	
		1063-2	천	200	287	-	-	국토교통부	
		276-14	천	44	82	-	-	국토교통부	
		276-17	천	104	254	-	-	국토교통부	
		1110	천	-	-	1,921	2,343	국토교통부	
		1041-40	천	-	600	-	-	국토교통부	